

#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

- 본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 시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- 수집된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 28 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와 의료법 제 21 조 2 항 기록열람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한 근거자료인 구비서류로 보관됩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① 수임인 | 성명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|
|       | 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 | 위임인과의 관계 |
|  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|
| ② 위임인 | 성명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|
|       | 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 |          |
|  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|
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 21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2 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위임인

(자필서명)

## ※ 유의사항

다른 사람의 서명 도용등에 의해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31 조와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, 같은법 제 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인등의 위조, 부정 사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